

제67회 방사선장해방어 감독자과정

Training course on radiation protection for supervisor

■ 교육목적

- 원자력 및 방사선 시설을 이용하여 전문 지식 전달과 방사선 방호 및 안전에 관한 역량 강화
- 산업,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방사선안전관리자 역할 또는 직무 수행을 위한 실무자 양성

■ 교육대상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SRI) 시험 응시생 중 관련 기술 습득 및 **실무경력(1년)**이 필요한 분

■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 교육기간 : 2026. 5. 11 (월) ~ 6. 19 (금) / 6주
- 교육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원(대전 본원) 원자력교육센터 제1강의실(104호)
- 교과목 및 교육시간(안) : [붙임1] 교육 안내문 참조

■ 모집인원 및 교육비

- 모집인원: 20명 내외 (**※ 15명 이하일 경우, 폐강**)
- 교육비: 1,600,000원/인 (**※ 순수 교육비이며, 숙식 및 교통수단은 본인이 해결**)
- 교육비 환불: [붙임4] 취소·환불에 따른 수수료 부과 안내 및 동의서 참조

교육비납입기한까지	교육비납입기한종료후 ~교육시작일까지	총 교육기간의 $\frac{1}{2}$ 경과전	총 교육기간의 $\frac{1}{2}$ 경과후
전액 환불	90% 환불	50% 환불	환불 불가

■ 수료기준

- 수료기준: 출석률 80% 이상 + 수료평가 60점 이상

■ 교육신청 및 교육비 납입

- 신청방법: 첨부된 [붙임2] 수강신청서, [붙임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4] 취소·환불에 따른 수수료 부과 안내 및 동의서(서명 후 스캔본)를 작성하여 E-mail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risri@kaeri.re.kr)
※ 이메일 송부 시 제목란에 “[67-SRI] 교육수강신청(성명 홍길동)” 을 작성하시어 신청 바람
- 신청기간: **2026. 3. 2.(월) 10:00 부터 선착순 신청, 2026. 3. 13.(금) 18:00 접수마감**
- 교육비 납입: 교육신청 완료 후 개인 이메일을 통해 안내 예정(안내예정일: 3월 18일)

■ 연락 및 문의처

- 상세한 사항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자 연락처: 042-866-6761, risri@kaeri.re.kr
- Homepage: <http://www.kaeri.re.kr/kntc>



FAQ



교육생

온라인 교육도 있나요?

원자력교육센터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집체교육**으로 온라인 교육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교육생

6주 교육 스케줄을 알고 싶어요!

원자력교육센터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까지 진행되며,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교육생

숙식 제공 되나요? 구내식당이나 기숙사 이용은 가능할까요?

원자력교육센터

교육비는 **순수 교육비 + 교재비** 입니다. 숙식은 기본 제공되지 않습니다. 구내식당은 이용 가능 합니다. 단, 기숙사의 경우, 외부인 이용이 불가능한 점 양해바랍니다.



교육생

폐강 가능성도 있나요?

원자력교육센터

15명 이하일 경우 폐강됩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생

RI 교육을 듣고 SRI 실무경력 인정이 되나요?

원자력교육센터



RI만 인정됩니다. RI(일반면허)는 4주 이상의 교육 수강, SRI(감독자면허)는 6주 이상의 교육 수강을 해야 실무경력이 인정됩니다. RI와 SRI 교육을 모두 수강한다고 SRI 실무경력 2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SRI는 실무경력 2년 중 1년만 SRI 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실제 실무경력 1년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면허관리실에 문의바랍니다.



교육생

수료기준에 출석, 수료평가가 있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수료 못 한 사람도 있나요?

원자력교육센터



1. 출석일 기준으로 80%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2. 수료평가는 4과목에 대하여 각각 100점 만점으로 평균 60점이상 통과입니다 (객관식)
- ※ 재시험 기회가 있으며, 교육수강 후 충분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교육생

이 교육만 들으면 응시자격이 되나요?

원자력교육센터



반드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응시자격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학과 및 학점이수로 실무 1년을 인정받을 경우에는 본 교육(6주 과정)은 실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시험 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실무(TLD)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실무(TLD)에 1년 이상 종사하고 다음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사람

- 1)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6주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감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 2)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

다.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아래 경력인정조건을 충족하고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실무(TLD)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이공계 4년제 대학을 수료한자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9-13호 별표4의 4개 경력인정분야별로 각각 1과목 포함하여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

라.이공계 4년제 대학에서 원자력(핵)공학, 방사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실무(TLD)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 후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실무(TLD)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바.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 후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실무(TLD)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사람

- 1)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6주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감독에 관한 교육훈련
- 2)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

사.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의 합이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아.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의 합이 2년 이상 종사하고 다음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사람

- 1)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6주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감독에 관한 교육훈련
- 2)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

자.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아래 경력인정조건을 충족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의 합이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이공계 4년제 대학을 수료한 자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9-13호 별표4의 4개 경력인정분야별로 각각 1과목 포함하여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

차.이공계 4년제 대학에서 원자력(핵)공학, 방사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의 합이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카.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 후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의 합이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타.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 후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의 합이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사람

- 1)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6주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감독에 관한 교육훈련
- 2)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

파.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취득한 사람

하.외국에서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 2023-1회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시험 응시(접수)안내에서 발췌하였으며, 반드시 원자력관계면허시험 홈페이지에서 당해년도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생

교육비는 교육이 끝난 후에 입금해도 되나요?

원자력교육센터

교육비는 교육 전, **교육비 납입기간 내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교육생 소속 회사 지침 상 교육 종료 후에만 납입이 가능한 분들께
임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교육생

청구계산서 형태 [청구와 영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원자력교육센터

청구는 저희가 '돈을 받기 위해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교육생
소속 회사에 **교육비 납부를 요구하기 위해 전자계산서를 먼저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선택해 주세요.**



원자력교육센터

영수는 저희가 '돈을 먼저 받고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청구계산서 없이도 **회사에서 교육비를 먼저 입금해 주시면, 입금 확인 후
영수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교육생

청구계산서를 발급 받아 교육비를 납입하고자 합니다.
계산서는 언제쯤 발행해 주시나요?

원자력교육센터

[교육 전/청구]를 선택하신 경우, **교육비 납입기간 1주 전 평일 중에
일괄적으로 발행합니다.**
[교육 후/청구]를 선택하신 경우, **교육 종료 이후 1주 이내에 발행되며,
계산서 일자 는 교육 종료일로 발행됩니다.**



교육생

교육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비 환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원자력교육센터

먼저 교육 담당자와 협의 하신 뒤, 교육비 환불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risri@kaeri.re.kr 메일로 보내주시면 처리해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1주일 전·후로 환불이 완료되며, **교육비 환불동의서의 규정에 따라 일부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이 환불될 수 있습니다.**





교육생

개인이 교육비를 납부하는 경우, 소득공제용 교육비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원자력교육센터

저희 기관은 국가에서 지정한 학원 또는 교습소로 분류되지 않아 소득공제용 교육비 영수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또한 저희 교육은 면세 대상으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아 현금영수증도 발급이 어렵습니다.



원자력교육센터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국세청 신고 의무에 따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근거: 부가세법 제32조 2항)로 전자계산서는 발급합니다.** 메일, 문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장에서 대면으로 받겠습니다.



교육생

방금 교육비를 입금했습니다. 입금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원자력교육센터

저희 기관 재무 시스템 상 **당일에 입금된 내역을 바로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입금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자 하는 경우, 익일에 연락 주시면 내역을 확인해 드릴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육생

저희 회사에서 벌써 입금했다는 데, 입금이 안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원자력교육센터

안내한 **계좌번호를 끝자리까지 꼭 확인하시고,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간혹 저희 연구원과 거래가 있는 기관의 경우, 회사 시스템에 기 등록된 한국원자력연구원 타 부서 계좌로 입금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생

거래명세서 또는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원자력교육센터

거래명세서 / 견적서 또는 기타 서류가 필요한 경우, **교육 신청 시 메일 본문에 별도로 필요한 서류를 기재**해 주시면 교육비 담당자가 발급하여 메일로 회신 드리겠습니다.

